

2018 미래희망스포츠청소년 지원계획(안)

저소득층의 스포츠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에 집중하여 우수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장학금을 지원하여 우리시의 경기력 향상과 학교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함.

1 사업목적

-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스포츠재능이 있는 초·중·고 운동부 학생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제공
-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스포츠아카데미 개최를 통하여 선수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운동 지속 여건 조성
- 중장기적인 스포츠꿈나무 발굴·육성으로 우리시 체육발전의 기초가 될 우수선수의 재원확보 및 소속감 제고
- 각 학교의 우수한 스포츠인력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위축된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

2 지원대상

- ☐ 지원대상 : 초·중·고등부 저소득층 및 어려운 환경의 학생선수
※ 학교 운동부 소속이며 대한체육회 등록선수에 한함.

구 분	대 상	비 고
기초생활수급자 (생계급여 중위30%이하)	-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중위 30% 이하인자	기초생활수급 증명서
차상위계층 (중위50%이하)	- 중위소득 50%이하 -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 수령자	차상위계층증명서, (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령자)

2018년 저소득층 학생선수를 위한 미래희망스포츠청소년 지원계획(안)

한부모가정 (중위52~60%)	중위소득 52~60%이내의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(취학시 22세 미만)자녀의 가정 (사별, 이혼, 미혼모, 미혼부, 장기간 무단가출 등 포함)	한부모가정 증명서
차차상위계층 (중위60%)	중위소득 60% 이내	1) 교육비지원대상 확인서(학교발급) 2) 보호자 소득증명 서류

※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금액(원/월)	1,672,105	2,847,097	3,683,150	4,519,202	5,355,254	6,191,307	7,027,359

*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836,052원씩 증가(8인가구: 7,863,411원)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39호(2017.8.4.)

※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(국민기초생활수급 기준)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교육급여 (중위 50%)	836,053	1,423,549	1,841,575	2,259,601	2,677,627	3,095,654
주거급여 (중위 43%)	719,005	1,224,252	1,583,755	1,943,257	2,302,759	2,662,262
의료급여 (중위 40%)	668,842	1,138,839	1,473,260	1,807,681	2,142,102	2,476,523
생계급여 (중위 30%)	501,632	854,129	1,104,945	1,355,761	1,606,576	1,857,392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생계급여자,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이에 상응하는 학생선수
- 소년소녀가장, 장애 가정, 다문화 가정 선수로 경기력이 우수한 자
- 서울시 소재지 초,중,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선수로 서울시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

※ 학교 운동부 소속이며 대한체육회 등록선수에 한함.

- 기타 운동에 소질이 있고 열의가 있어 장기적으로 육성 필요성이 있는 자로 가정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
- 긴급위기가정의 자녀(실직, 파산, 질병, 가족해체 등)
-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상기조건을 갖춘자 중 재추천 가능

※ 선발제외자

- 2018년 2월 고교 졸업(예정)자
- 형제, 자매 선수(1가구 1명 지원)
- 서울시 거주자이나 타시도 소재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
- 미래희망스포츠청소년 지원기간중(2~3년) 대회출전 성적이 미미하거나 추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

3 추진일정 및 추진절차



○ 추천방법 : 학교장의 추천을 통한 해당종목단체 또는 서울시교육청 추천

○ 선발방법 : 본회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· 선발

※ 학교체육소위원회 개최 : **2018. 3. 20(화) 예정**

- 동점자 발생시 **저학년** > 기초생활수급자 > 경기력 우수 선수 순

4 지원방침

- 매월 27일경 해당자 본인계좌 이체입금
-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학교장 및 종목단체는 본회에 필히 공지하여야 하며, 사유발생일로부터 이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 함.
 - 해당선수가 휴학, 자퇴 등 학업을 중단할 경우
 - 해당선수가 서울이외의 타지역으로 전학하였을 시

- 해당선수의 선수생활 중단 또는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운동의지가 저하된 경우
- 운동선수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 손상 시
- 지원중단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예산 범위내에서 예비 후보대상에게 지원

5 지원계획(안)

- 지원기간 : 3월 ~ 12월(10개월간)
- 확보예산 : 금380,000,000원
 - 장학금 지급 : 금370,000,000원
 - 장학증서 수여식 및 스포츠과학캠프개최 : 금10,000,000원
 - ※ 장학증서 수여 3월중, 스포츠과학캠프 7월중 예정(대상자 필참)
- 지원내역 : 최종신청현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별 선정인원 변동

구 분	육성장학금	인 원	연간소요금액	비 고
초 등	200,000원	26명	200,000원×26명×10월 = 52,000,000원	2,000천원/년
중 등	300,000원	46명	300,000원×46명×10월 = 138,000,000원	3,000천원/년
고 등	400,000원	45명	400,000원×45명×10월 = 180,000,000원	4,000천원/년
계		117명	370,000,000원	

6 대상자 관리

-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장학금 수혜자의 소속감 및 사명감 고취
- 여름방학 기간 중, 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과학캠프를 개최하여 기량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

- 연말(12월중)에 해당 선수의 전국(소년)체전과 각종 대회 출전결과 및 연간평가서(대회 사진첨부)를 제출토록 하여 경기력 관리 및 추후 지원여부 검토

7 제출서류

- (필수)미래희망스포츠청소년 지원신청서 1부(학교장 직인 필)([별첨1](#) 참조)
 - ※ 초·중학교 2월 졸업(예정)자의 경우 진학 학교장 추천서 첨부
- (필수)해당 종목단체장 또는 교육청 추천서([별첨2](#) 참조)
- (필수)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
- (필수)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 등 학교 및 공공기관 발행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
[증명서 발급 불가시 대체서류] - 1,2번 중 택1
 - 1) 교육비(수업료,방과후수강권,급식비 등) 지원 대상 확인서(소속학교 발급)
 - 2) 보호자 소득증명서류 1부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 - 근로자일 경우 : 201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 - 사업자일 경우 : 소득금액증명원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 - 무직일 경우 :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2개월분 (2017 ~ 2018. 1월 고지분 명시)
자격득실확인서(지역/직장)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- (필수)18년도 선수등록 확인서(소속 종목협회)
- (필수)16~17 경기실적 증명서(소속 종목협회)
- (필수)본인 통장사본 1부(※부모 및 타인 계좌 불가)
- (필수)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([별첨3](#) 참조)
- (선택)임대차 계약서(제출가능자만) 사본 1부
- (선택)전학기 성적증명서(제출가능자만) 사본 1부

8 선발계획(안)

○ 평가방법 :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점수로 환산·채점

구 분		점 수	비 고
저 소득	기초생활수급자 (생계급여-중위소득 30% 이하)	10	중위소득 30% 이하
	차상위계층 (주거, 의료, 교육급여)	8	중위소득 50% 이하
	한부모가정	6	중위소득 52~60% 이하
	차차상위계층(중위소득 60% 이내)	5	중위소득 60% 이하
	[가산점] - 각1점씩 부여 ※ 다문화,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 가정, 새터민, 조부모 가정 ※ 임대아파트 및 5000만원 이하 월세 주거 ※ 다자녀(3남매 이상), 조부모 부양 ※ 긴급위기가정 : 보호자 수감, 부도, 파산신청, 고액의 채무상환 입증시 ※ 학업 성적 우수자		
경 기 력	국제대회 : 국가대표 출전 또는 입상	3	※대회신기록 수립 = 1점 가산점 (득점왕, 최우수선수 등 포함)
	전국규모 대회 입상	2	
	서울대회 입상	1	
※ 저소득 관련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1) 교육비 지원 확인서(소속 학교 발급), 2) 보호자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대체서류로 구분하여 분류·채점			

○ 선정기본방침

- 평가점수 고득점자
- 동점자 발생시 : 저학년 > 기초생활수급자 > 경기력 우수자 순으로 선발
- 1가구 1명 지원(형제, 자매선수 중복 지원 불가)
- 지원 중단으로 인한 결원을 대비해 부별 예비 대상자 미리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 지원